

#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

## (강창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	제103호
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15.

발 의 자 : 강창남, 김재권, 이애숙 의원

### 1. 제정이유

- 이 조례안은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폐농기계 일제수거기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#### 나. 예산조치 : 2014년 추경 반영계획

#### 다. 합 의 : 농업기술센터와 합의되었음

#### 라.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 11. 15. ~ 11. 2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: 생략

##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폐농기계란 작물·축산 등의 생산·가공처리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모든 기계를 말한다.

**제3조(수거 처리)** ① 군수는 폐농기계 소유자나 마을이장 또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업무를 위탁대행 할 수 있다.

이 경우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폐농기계 처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거창군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보상금 지급)** ① 군수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폐농기계 소유자에게 해당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폐농기계의 기종에 따른 수거보상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.

**제5조(일제수거기간 운영)** 군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폐농기계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